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273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해당하는 의왕시 C에서 금형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오다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2013. 4. 2. D과 사이에 [redacted]시 E 공장용지 2,070㎡, F 도로 243㎡ 중 80/243 지분과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일 무렵 지급하였고, 중도금 17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13. 4. 15.로, 잔금 10억 원의 지급기일은 2013. 6. 1.로 각 정하였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2013. 5. 30.에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2013. 6. 13. 비로소 D에게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59,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6. 7. [redacted]시에 있던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2013. 6. 7.)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2013. 6. 13.)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도시에 있던 이 사건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을 피고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이전한 공장의 사업시작일보다 늦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에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유를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게 추가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②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③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대도시에 있던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응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잔금지급일을 2013. 6. 1.로 정하였으나, 이후 합의하여 잔금지급일을 2013. 6. 13.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3. D에게 잔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는 잔금지급 이전인 2013. 6. 7. 이 사건 공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간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에 취득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 적용범위 등을 검토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감면요건 규정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엄격해석원칙은 감면대상의 의미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확장하거나 유추함으로써 넓히지 말라는 것이지, 그 문언의 외연이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요건 규정의 해석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감면대상을 확장 내지 유추하여서도 안 되지만,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감면대상을 축소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면요건을 추가 내지 창설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것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 또한 법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감면요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법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 다른 법규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연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예비적 주장이므로 첫 번째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의 모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각종 공해의 예방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고, 이 사건 감면규정을 비롯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2. 3. 25.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로 제47조의4 단서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이후 1984. 5. 1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4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사업개시일 현재 이전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재차 개정되면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더라도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고, 1994. 12. 22.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과세에서 감면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은 내용의 감면규정이 마련되었다(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감면규정은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화와 각종 공해의 예방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의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기 위하여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부합됨에도 부동산 취득일이 사업시작일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984. 5. 12.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예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개시일과 부동산 취득일 사이의 시간적 간극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기 곤란한 경우, 예컨대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들어맞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규정은 이전 당시에는 임차 등 공장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다가 사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나, 이전 당시 취득한 부동산 외에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공장을 이전할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시점도 이전 후 사업개시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3. 6. 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공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장이 있던 의왕시 소재 부동산은 2013. 6. 7.까지는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예상보다 지체되어 잔금지급일이 2013. 6. 13.로 미뤄짐에 따라 부득이 D의 양해 하에 잔금지급 이전에 이 사건 공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④ 원고가 대도시에 있던 이 사건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분명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이 연기(잔금 지급이 지체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되면서 부득이 이 사건 공장의 이전이 취득일보다 6일 앞서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취득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사실상 최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예정한 상황,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사업시작일이 부동산의 취득일보다 몇 일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정경희

판사 이승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1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